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조의제1항제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문화보존상”을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속자료중 향토문화보존상”을 “민속자료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할 만한 자”를 “인정할 만한 자”로 한다.

제4조 중 “향토문화보존상”을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내주어야한다”를 “내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보유자중”을 “보유자 중”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자원보존지구”를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문화재외”를 “지정문화재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지구”를 “해당 지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문화재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조 에서 “발주청””을 “이 조에서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 ⑤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 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등”을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등”으로,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4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지정문화재등”으로, “소화설비 등”을 “소화설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화설비 등”을 “소화설비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47조 중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등”을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문화재등”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처리기간 30일
추천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⑥기관명		⑦주소	
	⑧대표자		⑨주민등록 번호	
	⑩전화번호		⑪전자메일	
	⑫수의사 면허번호		⑬수의사 면허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청    장    [인] 추천인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의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p>				
※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 추천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추천기관	처리기관 (담당부서)
자치구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div data-bbox="268 931 681 1077">추천서 및 의견서 작성</div> →  <div data-bbox="268 1294 681 1440">지정서 교부</div> ←	<div data-bbox="866 931 1310 1077">접수</div> ↓ <div data-bbox="866 1294 1310 1440">결정</div>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① 교부 번호	② 교부 일자	③ 기관명	④ 지정일	대 표 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수 의 사 면허번호	⑧ 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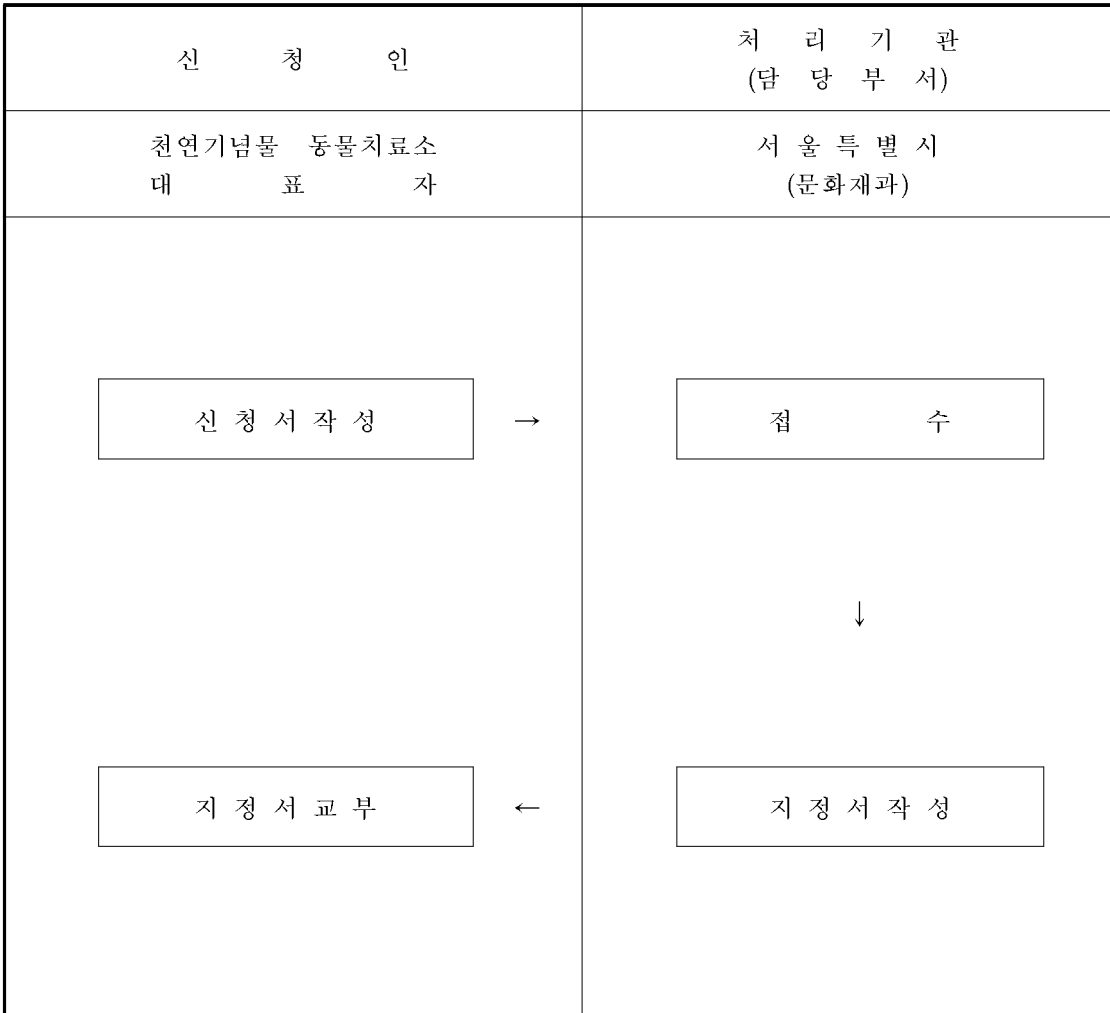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하고, <u>시</u>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 ----- ----- -----</p>
<p>제3조(지정문화재) ① (생략)</p> <p>1. 유형문화재 : <u>법 제2조의제1항제1호</u>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p> <p>2. (생략)</p> <p>3. 기념물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u>향토문화보존상</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p> <p>4. 민속자료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u>민속자료중 향토문화보존상</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u>인정할만한 자</u>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4조(문화재자료)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p>	<p>제3조(지정문화재) ① (현행과 같음)</p> <p>1. ----- : <u>법 제2조제1항제1호</u>-----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향토문화 보존을 위해</u> ----- -----</p> <p>4. -----<u>민속자료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인정할 만한 자</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문화재자료) ----- -----</p>

현 행	개 정 안
<p>문화재 중 <u>향토문화보존상</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p> <p>제7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또는 문화재 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u>내주어야 한다</u>. 다만,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이하 "<u>지정문화재 등</u>"이라 한다)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u>지정문화재 등</u>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법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부터 <u>지정문화재 등</u>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② ~ ③ (생략)</p>	<p><del>-----향토문화 보존을 위해-----</del></p> <p>-----</p> <p>-----</p> <p>-----</p> <p>제7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 -----</p> <p>-----</p> <p>-----</p> <p>-----</p> <p><u>내주어야 한다.</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p> <p>-----</p> <p>-----</p> <p><del>-----"지정문화재등"-----</del></p> <p>-----</p> <p>-----</p> <p><del>-----지정문화재등-----</del></p> <p>-----</p> <p>-----</p> <p><del>-----지정문화재등-----</del></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현 행	개 정 안
<p>호가목에 따라 <u>문화자원보존지구</u>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p>	<p>-----,</p>
<p>제13조(사적건축물보존지구의 지정)</p> <p>① 시장은 <u>도시계획조례</u> 제9조제3호에 따라 <u>지정문화재외</u>에 고유의 전통 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이하 "사적건축물"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사적(史的)건축물보존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시장은 사적건축물보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u>해당지구</u>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3조(사적건축물보존지구의 지정)</p> <p>① -----<u>도시계획 조례</u>----- -----<u>지정문화재 외</u>----- ----- ----- ----- ----- -----,</p> <p>② ----- -----<u>해당 지구</u>-----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u>지정문화재</u>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1. <u>지정문화재</u> 등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p> <p>2. <u>지정문화재</u> 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p>	<p>제14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① ----- ----- -----<u>지정문화재등</u>----- ----- ----- -----, ② (현행과 같음)</p> <p>1. <u>지정문화재등</u>----- ----- 2. <u>지정문화재등</u>----- -----</p>





현 행	개 정 안
<p>제1항에 따라 수리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은 <u>지정문화재</u> 등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p>----- -----<u>지정문화재등</u>-----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p>
<p><u>제18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 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이 6명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는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li> <li>2.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li> </ol> <p><u>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u>③ 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④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u></p> <p><u>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의 평가</li> </ol>	<p><u>제18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li> <li>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관련 기관</li> <li>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li> </ol>



현 행	개 정 안
<p><u>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용역 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 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u></p> <p>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p> <p>3.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p> <p>⑥ 시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⑦ 시장은 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⑧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동물보호단체</u></p>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의사 면허증 사본</li> <li>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li> </ol>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li> <li>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u>지정문화재</u> 등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p>	<p>된 경우 : 해당 지정서</p> <p>3. <u>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u></p> <p>⑤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지정을 받은 경우</u></li> <li>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li> <li>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li> <li>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치료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li> <li>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li> <li>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ol> <p>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u>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 -----<u>지정문화재</u>-----</p>

현 행	개 정 안
<p>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지정문화재</u>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u>지정문화재</u>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허가 사항) <u>지정문화재</u>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지정문화재</u>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li> <li>3. <u>지정문화재</u>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li> </ol>	<p>----- ---, ② -----<u>지정문화재</u>----- ----- -----<u>지정문화재</u>----- -----, 제20조(허가 사항) <u>지정문화재</u>등--- ----- ----- ----- -----, 1. (현행과 같음) 2. <u>지정문화재</u>등----- ----- -- 3. <u>지정문화재</u>등-----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新舊)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書)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 략)</li> <li><u>지정문화재</u> 등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li> <li>(생 략)</li> <li><u>지정문화재</u> 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li> <li>(생 략)</li> <li><u>지정문화재</u>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li> <li>~ 8. (생 략)</li> <li><u>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u> 등을 <u>서울특별시</u>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li> </ol> <p>제24조(보조금)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u>지정문화재</u>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li> </ol>	<p>-----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u>지정문화재</u>등----- -----</li> <li>(현행과 같음)</li> <li><u>지정문화재</u>등----- -----</li> <li>(현행과 같음)</li> <li><u>지정문화재</u>등----- -----</li> <li>~ 8. (현행과 같음)</li> <li><u>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등</u>--<u>시</u>----- ----- -----</li> </ol> <p>제24조(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정문화재</u>등----- -----</li> </ol>

현 행	개 정 안
<p>2. (생 략)</p> <p>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u>지정문화재</u> 등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p> <p>4. ~ 5.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u>지정문화재</u> 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 할 수 있다.</p> <p>제 26조(경비 부담) 시장은 <u>서울특별시</u>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u>서울특별시</u>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제 28조(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u>지정문화재</u> 등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지정문화재</u> 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u>지정문화재</u> 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p>	<p>2. (현행과 같음)</p> <p>3. -----<u>지정문화재</u>-----</p> <p>-----</p> <p>-----</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u>지정문화재</u>-----</p> <p>-----</p> <p>-----</p> <p>제 26조(경비 부담) -----<u>시</u>-----</p> <p>-----</p> <p>-----<u>시</u>-----</p> <p>-----</p> <p>-----</p> <p>제 28조(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u>지정문화재</u>-----</p> <p>-----</p> <p>-----</p> <p>-----</p> <p>② -----<u>지정문화재</u>-----</p> <p>-----</p> <p>-----</p> <p>③ -----<u>지정문화재</u>-----</p> <p>-----</p>

현 행	개 정 안
<p>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 관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 -----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 29조(관람료의 징수) ① <u>지정문화재</u> 등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 29조(관람료의 징수) ① <u>지정문화재등</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30조(정기조사) ① 시장은 <u>지정문화재</u> 등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u>지정문화재</u>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u>지정문화재</u> 등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p>	<p>제 30조(정기조사) ①-----<u>지정문화재등</u>----- ----- ----- ----- -----</p> <p>② ----- ----- ----- ----- -----</p> <p>--<u>지정문화재등</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지정문화재등</u>----- ----- -----</p>

현 행	개 정 안
<p>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 ⑦ (생 략)</p> <p>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u>지정문화재</u> 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1. <u>지정문화재</u> 등의 지정과 그 해제</p> <p>2. <u>지정문화재</u>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p> <p>3. (생 략)</p> <p>4. <u>지정문화재</u> 등의 수리 및 복구</p> <p>5. <u>지정문화재</u>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p> <p>6. 그 밖에 <u>지정문화재</u>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p> <p>제 3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u>지정문화재</u>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 37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p>	<p>----- -----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u>지정문화재</u>----- -----, 1. <u>지정문화재</u>----- 2. <u>지정문화재</u>----- ----- 3. (현행과 같음) 4. <u>지정문화재</u>----- 5. <u>지정문화재</u>----- ----- ----- 6. -----<u>지정문화재</u>----- -----</p> <p>제 3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 ----- -----<u>지정문화재</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 37조(위원회의 설치) ① -----</p>



현 행	개 정 안
<p>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u>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정문화재</u> 등의 지정과 그 해제</li> <li>2. <u>지정문화재</u>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li> <li>3. (생 략)</li> <li>4. <u>지정문화재</u> 등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li> <li>5. <u>지정문화재</u> 등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반출의 허가</li> <li>6. <u>지정문화재</u>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li> <li>7. (생 략)</li> <li>8. <u>지정문화재</u> 등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li>9. (생 략)</li> <li>② (생 략)</li> </ol> <p>제 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b>40명</b>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p> <p>제 4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u>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u></p>	<p>----- -----<u>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정문화재</u>등-----</li> <li>2. <u>지정문화재</u>등----- -----</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지정문화재</u>등----- -----</li> <li>5. <u>지정문화재</u>등----- -----</li> <li>6. <u>지정문화재</u>등----- ----- -----</li> <li>7. (현행과 같음)</li> <li>8. <u>지정문화재</u>등----- ----- ----- -----</li> <li>9.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ol> <p>제 40조(전문위원) ① -----<b>50명</b>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 4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u>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u></p>

현 행	개 정 안
<p><u>문화재를 포함한다</u>)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생 략)</p> <p>제 45조(화재예방 등) ① 시장은 <u>지정 문화재</u> 등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지정문화재</u> 등의 관리단체는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지정 문화재</u> 등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u>소화설비</u>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가 <u>소화설비</u>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 46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p>	<p><u>문화재를 포함한다</u>)등-----</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45조(화재예방 등) ① -----<u>지정 문화재</u>등-----</p> <p>-----</p> <p>-----</p> <p>② <u>지정문화재</u>등-----</p> <p>-----</p> <p>-----<u>지정 문화재</u>등-----</p> <p>-----</p> <p>-----<u>소화설비</u>등-----</p> <p>-----</p> <p>③----- <u>소화설비</u>등-----</p> <p>-----</p> <p>제 46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p>

현 행	개 정 안
<p>(생 략)</p> <p>1. (생 략)</p> <p>2. <u>지정문화재</u>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중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p> <p>② (생 략)</p> <p>③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u>지정문화재</u>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④ (생 략)</p> <p>제47조(개발 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u>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u>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1조(사무의 위임) (생 략)</p> <p>1. (생 략)</p> <p>2. 제20조제2호에 따른 <u>지정문화</u></p>	<p>(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정문화재등</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지정문화재등</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7조(개발 사업에서의 문화재 보호) ----- -----<u>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등</u>----- ----- -----.</p> <p>제51조(사무의 위임)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정문화</u></p>

현 행	개 정 안
<p><u>재 등</u>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p> <p>3. 제22조에 따른 <u>지정문화재 등</u>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명령 및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p> <p>4 ~ 5. (생 략)</p> <p><u>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del>재 등</del>----- ---</p> <p>3. -----<del>지정문화재 등</del>----- ----- ----- ---</p> <p>4. ~ 5.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